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44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2.

발 의 자:허 영·위성곤·박성준

임호선 • 전재수 • 박 정

이훈기 · 김영진 · 강훈식

진성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재난의 대응,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만을 총괄·조정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현행 체제는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.

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·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항 중 "대응·복구(이하 "수습"이라 한다)"를 "대응·복구(이하 "수습"이라 한다) 및 예방·대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)	제14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)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	①
모 재난(이하 "대규모재난"이라	
한다)의 대응・복구(이하 "수	<u>대응·복구(이하</u>
<u>습"이라 한다)</u> 등에 관한 사항	"수습"이라 한다) 및 예방ㆍ대
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	<u>비</u>
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	
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	
"중앙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	
다.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